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조사

2025. 8



Contents

SECTION I.	조사개요	2
SECTION II.	조사결과	3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3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 애로사항	6
	3. 정책과제	9
SECTION III.	요약 및 시사점	11
그림 목차		
	<그림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 관리 수준 및 작업환경 변화	3
	<그림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인식 변화	4
	<그림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관리 예산 변화	4
	<그림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관리 예산 현황	5
	<그림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6
	<그림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시 부담되는 사항	7
	<그림 7> 위험성평가 인식 여부	8
	<그림 8> 위험성평가 수행 방식	8
	<그림 9> 위험성평가에 따른 기업 애로 사항	8
	<그림 1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기업 지원 정책 활용 여부 및 만족도	9
	<그림 1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9
	<그림 12> 중대재해처벌법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	10

I

조사 개요

○ 조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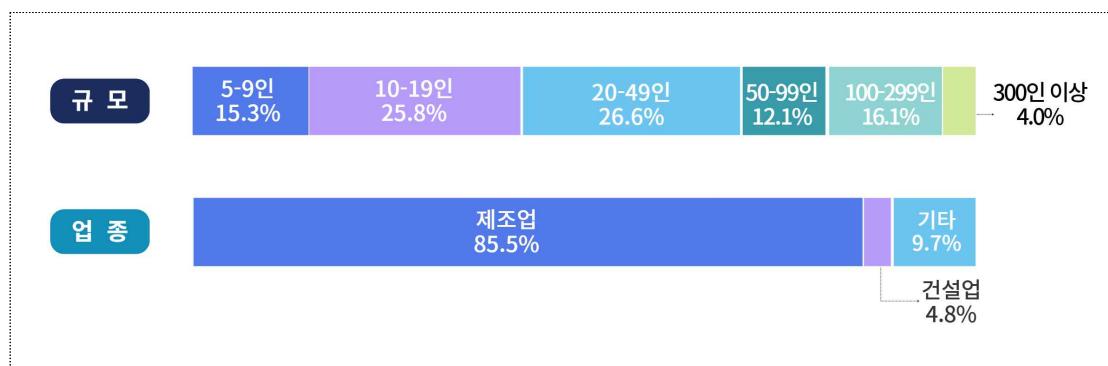
-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조사기간 : 2025. 7. 2(수) ~ 7. 25(금)

○ 조사방법 : 현장 설문조사 및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기업 : 인천지역 중소기업 124개사(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응답기업 분포



○ 응답항목 : 13개 문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 관리 및 인식 변화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애로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 개선 필요 사항
- 위험성 평가 인지 여부, 수행 방식, 애로사항
- 기타 건의사항 등

II 조사 결과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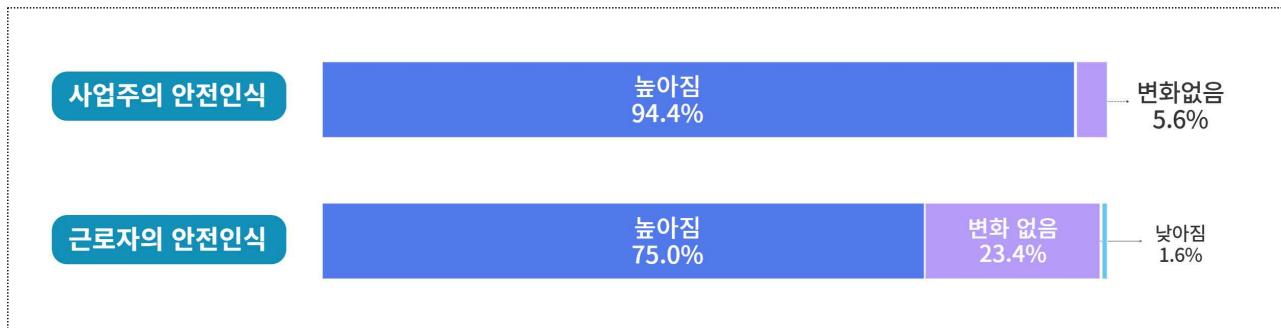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인천지역 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조사'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인천지역 기업들의 83.9%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과 작업 환경은 법 시행 전보다 '향상된 것'('다소 향상됨'(60.5%), '매우 향상됨'(23.4%))으로 나타남. 반면,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6.1%를 차지함.
-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기업은 79.7%가 법 시행 후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과 작업환경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지 4년이 된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응답기업의 92.5%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과 작업환경이 법 시행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됨.
 - 50인 미만 : '향상됨'(79.7%)('다소 향상됨'(58.3%), '매우 향상됨'(21.4%)) > '큰 변화 없음'(20.2%)
 - 50인 이상 : '향상됨'(92.4%)('다소 향상됨'(65.0%), '매우 향상됨'(27.5%)) > '큰 변화 없음'(7.5%)

<그림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 관리 수준 및 작업환경 변화



-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도 인천지역 기업들의 94.4%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주의 안전인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75.0%가 '근로자의 안전인식도 높아졌다'고 응답함.

<그림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인식 변화



- **안전관리 예산**(인건비, 조직운영비, 안전시설, 보호장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의 경우도 전체 응답기업의 75.8%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증가한 것'('다소 증가함'(66.1%), '매우 증가함'(9.7%))으로 조사되었음. 한편, '변화가 없는' 기업도 24.2%를 차지함.
-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기업은 70.2%가 법 시행 후 안전관리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인 이상 기업의 87.5%가 안전관리 예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함.
 - 50인 미만 : '증가함'(70.2%)('다소 증가함'(61.9%), '매우 증가함'(8.3%)) > '큰 변화 없음'(29.8%)
 - 50인 이상 : '증가함'(87.5%)('다소 증가함'(75.0%), '매우 증가함'(12.5%)) > '큰 변화 없음'(12.5%)

<그림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관리 예산 변화



- 전체 응답기업의 **안전관리 예산 규모**를 보면, '1천만원 이하'로 편성한 기업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23.3%), '1억원 이상'(9.2%),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7.5%),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5.0%)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안전관리 예산은 기업 규모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50인 미만 기업의 69.5%가 안전관리 예산은 '1천만원 이하'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관리 예산 규모는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3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 기업도 18.4%를 차지함.
 - 50인 미만 : '1천만원 이하'(69.5%)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15.9%)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6.1%) > '1억원 이상'(4.9%) >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3.7%)
 - 50인 이상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39.5%) > '1천만원 이하'(23.7%) > '1억원 이상'(18.4%) >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15.8%)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2.6%)

<그림 4>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기업 규모에 따라 작업 환경 개선, 안전관리 예산 확보 등의 수준은 차이를 보였음.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전문 인력, 시설·설비 투자 비용 등의 제약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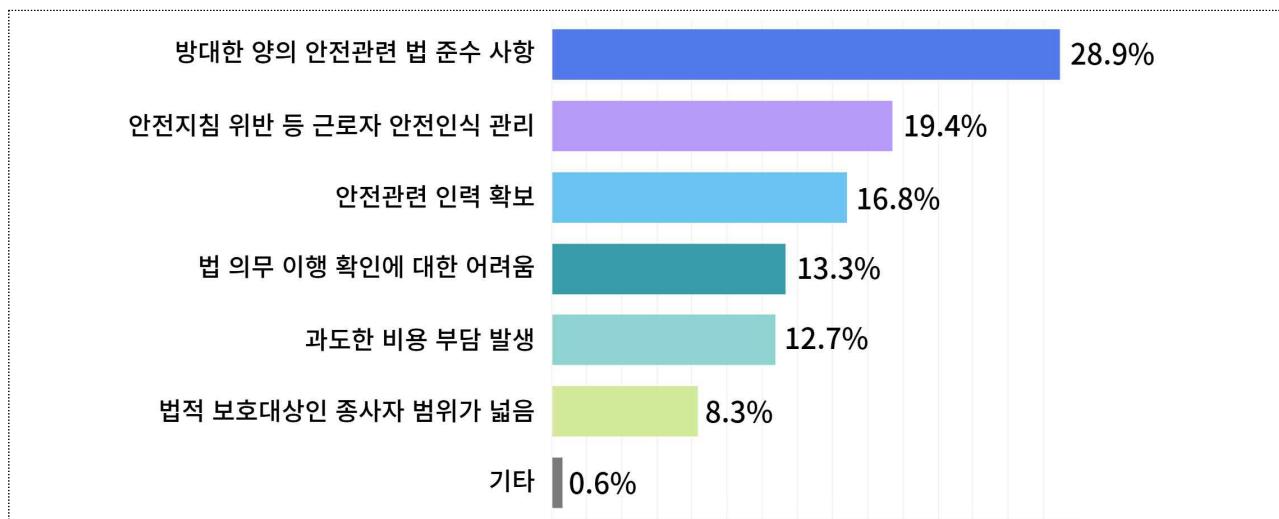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용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5) 안전보건책임자등의 충실향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응답기업의 28.9%는 '방대한 양의 안전 관련 법 준수 사항'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다음으로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19.4%), '안전관련 인력 확보'(16.8%)도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었음. 이어, '법 의무 이행 확인에 대한 어려움'(13.3%),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2.7%), '법적 보호대상인 종사자 범위가 넓음'(8.3%) 등의 애로도 조사됨.

〈그림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 응답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 마련'(20.8%)을 꼽았음. 다음으로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19.7%), '안전보건관리자, 관리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18.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12.1%)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시 부담되는 사항



-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가 필요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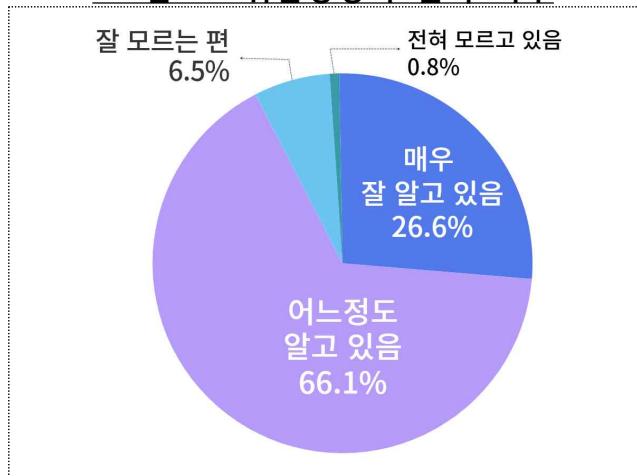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 1)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임
- 2) 실시주체 :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현장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함
- 3)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4) 실시대상 : 모든 사업장
- 5) 실시시기 : (정기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계획의 실행 착수 전 또는 재해발생작업 재개 전에 실시
- 6) 절차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파악 → 위험성추정 → 위험성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종료 →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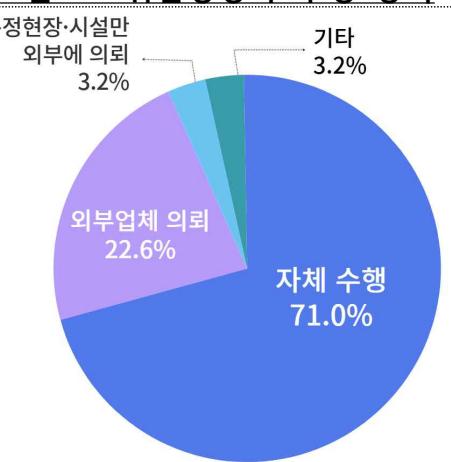
* 자료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2020. 6), 고용노동부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업이 92.7%('어느정도 알고 있음'(66.1%), '매우 잘 알고 있음'(26.6%))를 차지함. 또한, 위험성평가는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71.0%로 나타났으며,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곳도 22.6%로 조사됨.

<그림 7> 위험성평가 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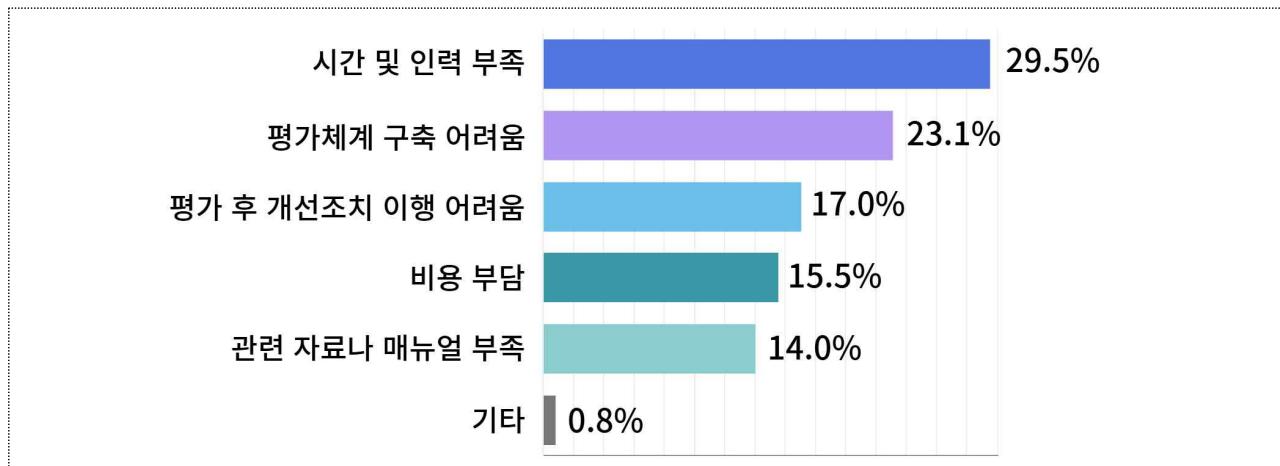


<그림 8> 위험성평가 수행 방식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이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기업들은 '시간 및 인력 부족'(29.5%)을 가장 많이 꼽았음. 또한, '평가체계 구축 어려움'(23.1%), '평가 후 개선조치 이행 어려움'(17.0%), '비용 부담'(15.5%), '관련 자료나 매뉴얼 부족'(14.0%) 등의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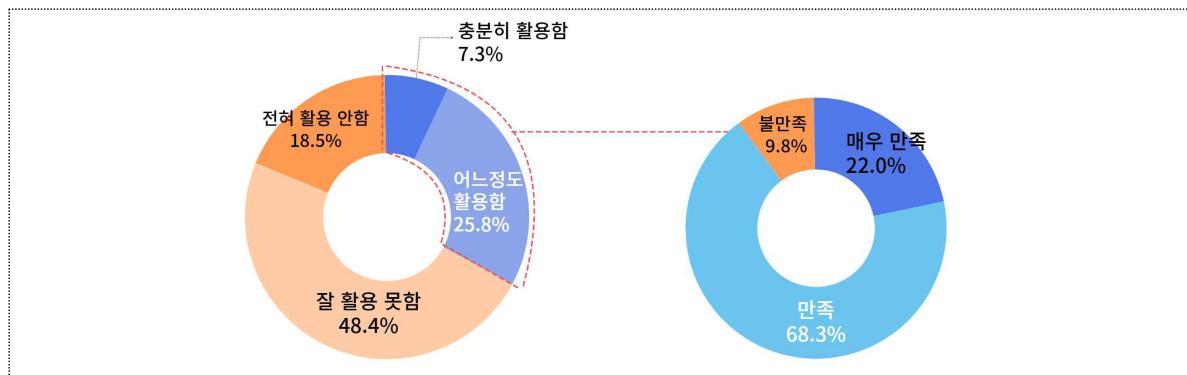
<그림 9> 위험성평가에 따른 기업 애로 사항



3.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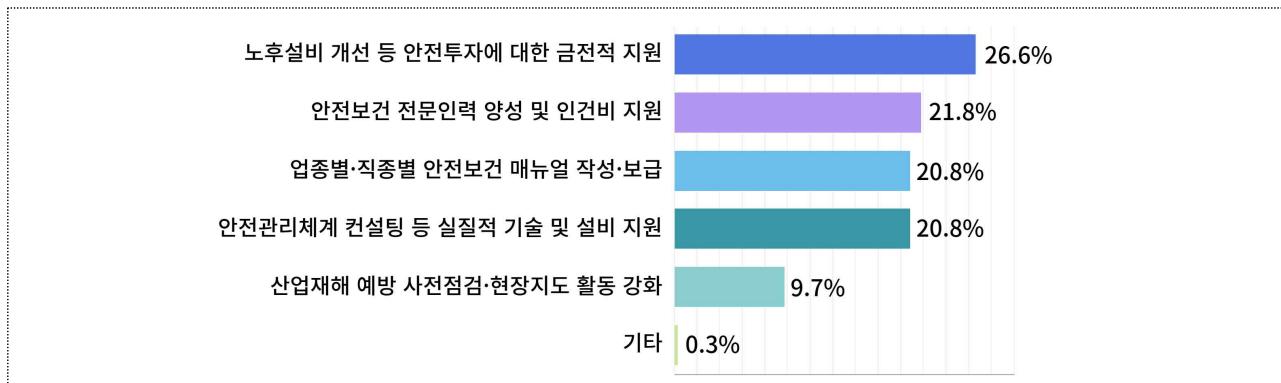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한’ 기업은 33.1%('어느정도 활용함'(25.8%), '충분히 활용함'(7.3%))에 불과하였음. 66.9%의 기업은 지원 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잘 알지 못함'(41.3%), '전혀 알지 못함'(3.3%)) 나타남.
- 법 대응을 위해 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한(33.1%) 기업들의 90.3%가 지원정책에 ‘만족한 것’('만족'(68.3%), '매우 만족'(22.0%))으로 나타나, 지원 정책을 활용한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기업 지원 정책 활용 여부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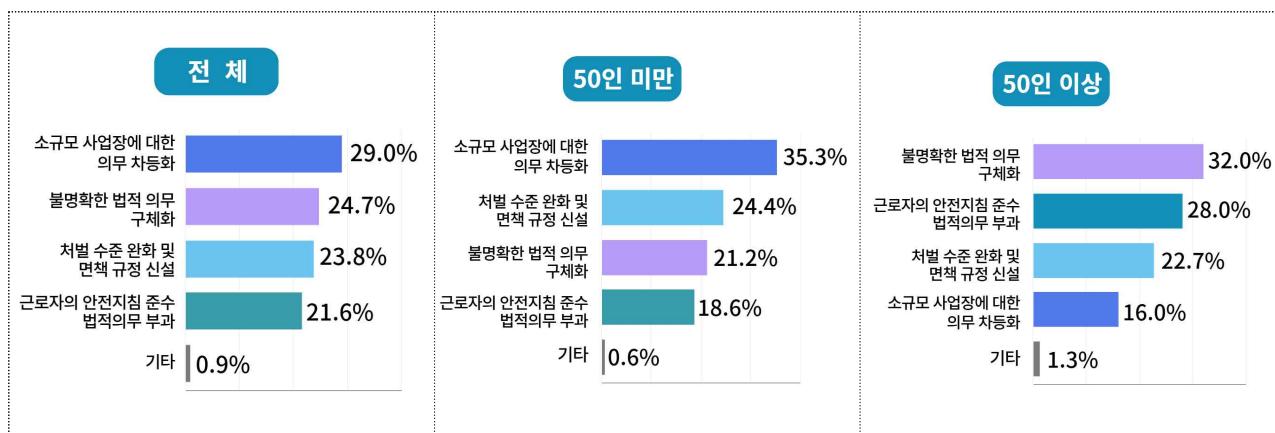
-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26.6%)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21.8%),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20.8%),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20.7%),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9.7%) 등의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29.0%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적의무 차등화’라고 응답함. 이외에도 ‘불명확한 법적 의무 구체화’(24.7%), ‘처벌 수준 완화 및 면책 규정 신설’(23.8%), ‘근로자의 안전 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21.6%) 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의무 차등화’(35.3%)에 대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불명확한 법적 의무 구체화’(32.0%)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그림 12> 중대재해처벌법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



III 요약 및 시사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인천지역 기업 124개 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조사'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기업들은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기업 규모에 따라 작업 환경 개선, 안전관리 예산 확보 등의 수준은 차이를 보였음.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전문 인력, 시설·설비 투자 비용 등의 제약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인천지역 기업들의 83.9%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과 작업 환경은 법 시행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규모별 보면, 50인 미만 기업은 79.7%, 50인 이상 기업은 92.5%가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과 작업환경이 법 시행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됨.
-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도** 인천지역 기업들의 94.4%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주의 안전인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75.0%가 '근로자의 안전인식도 높아졌다'고 응답함.
- **안전관리 예산**(인건비, 조직운영비, 안전시설, 보호장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의 경우도 전체 응답기업의 75.8%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기업은 70.2%, 50인 이상 기업은 87.5%가 안전관리 예산이 중처법 시행 전보다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기업의 **안전관리 예산** 규모를 보면, '1천만원 이하'로 편성한 기업(55.0%)이 가장 많았고,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23.3%) 등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특히 안전관리 예산은 기업 규모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남.
 - 50인 미만 기업의 69.5%가 안전관리 예산을 '1천만원 이하'로 편성. 반면,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관리 예산 규모는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3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 기업도 18.4%를 차지함.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대한 양의 안전 관련 법 준수 사항'(28.9%),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19.4%), '안전관련 인력 확보'(16.8%)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음.
- 응답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 마련'(20.8%),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19.7%), '안전보건관리자, 관리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18.4%),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12.1%) 등을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꼽았음.
- 또한, 법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92.7%)이 대다수였으며,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71.0%로 나타남.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이행에 따라 기업들은 '시간 및 인력 부족'(29.5%), '평가체계 구축 어려움'(23.1%), '평가 후 개선조치 이행 어려움'(17.0%), '비용 부담'(15.5%), '관련 자료나 매뉴얼 부족'(14.0%) 등의 어려움을 호소함.
-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하여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26.6%),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21.8%),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20.8%),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20.7%), 등의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함.
- **중대재해처벌법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적의무 차등화'(29.0%), '불명확한 법적 의무 구체화'(24.7%), '처벌 수준 완화 및 면책 규정 신설'(23.8%),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21.6%) 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의무 차등화'(35.3%)에 대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불명확한 법적 의무 구체화'(32.0%)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재원 조달, 인력 확보 등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법을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우선,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돋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함.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인건비 지원, 장비 구비·노후 설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업종·직종별 기업 맞춤형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배포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등 지원 사업이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지원 정책 활용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지원 규모·조건 확대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인천지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수¹⁾는 46명, 사고사망만인율²⁾은 0.48‰이었으나, 2024년 현재 사고사망자수 49명, 사고사망만인율 0.47‰로 법 시행 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재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적의무 차등화, 불명확한 법적 의무 구체화, 면책규정 신설, 근로자 안전지침 준수 의무 부과 등 입법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함.
- 또한, 강화되는 안전 규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인력 등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사고사망자수(명)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근로자수)×10,000